

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환급금 산출방식(제12조관련)

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총액 =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
우권의 총 발매금액 $\times$ {1-(우권의 발매수득률+우권의 발매과세율)}